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-2475호

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·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83조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조합 사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, 수취인불명,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조합에 대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(공시송달)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·확인 관련 사항을 통지하오니 희망하시는 청문 당사자(대표자)께서는 기한 내 청문조서를 열람·확인 및 정정 신청바랍니다.

2024년 9월 5일
서울특별시

1. 청문 당사자(조합)

연번	인가번호	조합명	조합 소재지	대표자	청문사유
1	서울특별시 제2011-10호	참누리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	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, 비동 1420호	남문식	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정지
2	서울특별시 제2011-17호	국민복지의료 생활협동조합	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31-27 삼미뉴타워 2층	전완식	

2. 청문조서 열람·확인 장소 :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, 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과

3. 열람·확인 및 정정기간 : 2024. 9. 30.(월)까지

4. 관련법령

- 「행정절차법」 제34조(청문조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(청문조서의 열람 등)

5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경제과(담당자 ☎02-2133-536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의3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청문조서 정정요구서

예정된 처분의 제목	
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	
당사자	성 명(명칭)
	주 소
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	
정정 요구의 내용	
기 타	
「행정절차법」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.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(서명 또는 인)	
※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